

비밀

建設工事 都給 契約書

1. 공사명 : 배기시스템 증설공사

2. 도급금액 : 일금삼천이백만원정 (₩32,000,000) -- 부가세 별도

3.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4. 공사기간 : 착공 2001년 07월 18일
 : 준공 2001년 07월 31일

5. 대금의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일금육백사십만원정(₩6,400,000) -- 부가세별도

(2)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 부터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중도금 : 일금일천구백이십만원정(₩19,200,000) -- 부가세 별도

다. 잔금 : 일금육백사십만원정(₩6,400,000) -- 부가세 별도

라.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 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6.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7. 하자보수보증금율 : 10%

8. 하자이행책임기간 : 12개월

9. 자체상금율 : 일 3/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도급공사 계약조건, 설계도 (1)부, 시방서 (1)부, 공사내역(1)부
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1년 07월 18일

발주자 :

상호 :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대표이사 : 이용한



수급자 :

상호 : 주식회사 휴먼이엔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30

대표이사 : 이순주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 1조 (설계도에 의한 공사)

"을"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기술계약 사양서, 현장설명서 포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조 (시방서 및 "갑"의 지시우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차이가 있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공사의 전부를 일괄해서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4조 ("을"의 현장대리인)

"을"은 현장일절의 사항을 처리하며 또 그 책임을 질 기술자격소유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정 "갑"의 승인을 얻어 상주시켜야 한다.

제 5조 ("을"의 용역 교체)

"갑"은 "을"의 현장대리인, 안전책임자, 주임기술자, 사용안전노무자등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을"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이들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 6조 (공사자재 및 공사용 기기)

가) "을"이 부담하는 공사용 자재 및 공사용기기는 "갑"의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검사에 불합격품은 본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용품에 대하여 새로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을"은 공사용 자재 중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그 시험필증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지정 감독원의 입회시공)

수중 또는 지중의 공사 기 기타 완성 후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을"은 시공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갑" 또는 "갑"의 지정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8조 ("갑"의 허가사항)

"을"은 다음의 시공 중 발생한 조건에 대하여는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가) 도면 또는 시방서상에 의문이 있을 때
- 나) 도면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 다) 시공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 라) 공사 시공에 있어서 "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 9조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 변경)

전항의 경우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시공부분의 부분개선 및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을"은 그 부분을 "갑"의 지시에 따라 곧 개선하여야 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로 인한 공기는 연장할 수 없다.



제11조 (공사시공으로 인한 손해처리)

공사시공 및 현장관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종업원 및 제3자의 인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을"의 책임하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 준공전의 손해부담)

공사가 완공되어 인도하기 전에 계약의 목적물, 검사필의 공사비 자재 "갑"이 공급한 자재 대여품에 대한 손해 및 기타 시공도중 발생한 모든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13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가) 천재지변, 기타 "갑"과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 기성부분, 검사필의 목적물 또는 검사 완료된 검사자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사고발생 후 곧 상황을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철저한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갑",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 다) 화재보험 및 기타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액은 제외된다.

제14조 ("갑"의 검사)

-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을"은 입회하여야 한다.
- 가) 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을"은 "갑"이 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시공하고 "갑"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전항의 경우 "을"이 적당한 사유없이 보수시공치 않을 때 "갑"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을"의 공사 도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대금의 지급 및 정산)

- 가) "을"은 공사완료 후 계약의 목적물을 "갑"에게 양도하며, "갑"은 "을"의 신청금액을 근거로 공사금액을 정산 지급토록 한다.
- 나) 공사금액이 지급된 부분의 건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지급 완료한 시설물에 대한 도급자의 유지책임 및 보수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다)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 또는 감소물량에 대하여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하지 아니하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상호합의 정산토록 한다.
- 라) 정산기준은 내역서의 단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기준은 물가자료 및 정부품셈을 적용하며 공사 완료 후 내역서와 물량과 현물을 대비하여 현저히 많은 물량이 반영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하여야 한다.(내역서 물량이 부족 할 경우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채권 및 담보금지)

- "을"은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하자 보증)

- 가) "을"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갑"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2개월간 하자의 책임을 진다.
- 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갑"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을"에게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명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의적
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공사변경 및 추가)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증감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내역서에
기재치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물가정보 및 시가를 참조하여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지체상금)

"을"이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갑"은 지체일수 매1일 대하여 도급금
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 지불 시 공제 후 지불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지된 공사의 착공)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갑"이 ~~지시하여~~ 일단 정지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착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착공일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갑"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중지 및 해제)

"갑"은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공사를
완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요구에 의하여 "갑"은 검사를 필한 후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해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을"이 적당한 사유없이 착수일을 경과하도록 착수하지 않을 때
- 나) 공기내에 "을"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제22조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을"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갑"에게 서면 통보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갑"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이유없이 공사의 지연 또는 중지기간이 2개월 이상 또는 전공기의 3분의 1이 초과될 때
- 나) "갑"이 공사를 현저히 감소시켜 도급금액의 3분의 2이상을 고의로 감소시켰을 때
- 다)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
- 라)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23조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이 요구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갑"이 요구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을"의 납부금액, 공제 후 지급)

"을"이 납부할 자체상금, 위약금, 기타 배상금 또는 하자공사비 중 "갑"이 스스로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때 위의 금액으로 부족할 시는 추징할 수 있다.

제26조 (노동법의 관계법내의 "을"의 책임)

- 가) "을"은 노동법의 관계법에 의한 사업주 혹은 사용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나) 공사현장에 노임 체불이 주원인이 되어 공사 시행에 차질이 있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갑"은 계약금 내에서 "을"의 동의 없이도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관리)

- 가) "을"은 현장 대리인 및 고용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공사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진다.
- 나) "을"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필증을 "갑"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인력투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안)

"을"은 계약서 및 공사를 통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 (작업원의 기강)

가) "을"은 당사의 모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의 복장은 모두 통일해서 착용하며 당사 사원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0조 (유권해석)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과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갑"과 "을"의 협의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인허가사항)

가) 본 공사의 제반 인, 허가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준공 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을"은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제출 및 승인서류)

"을"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일정표 : 2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기술계약서양서 : 2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승인도 (승인 후 제작) : 2부
- VENDOR LIST (승인 후 제작) : 2부
- INSPECTION TEST PROCEDURE : 2부

- 상세제작 및 설치도면 : 2부
- 모든 도면수록 DISKET : 2부
- 설비시운전 및 운전요령서 : 2부
- 최종 성능검사 REPORT : 2부

제34조 (기준 및 적용 우선순위)

본 공사 수행시 기준 및 적용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가)당사의 견적기술 사양서
- 나)견적서 및 공사 내역서
- 다)기술계약 사양서
- 라)회의록

제35조 (GUARENTEE 사항)

UTILITY SPEC'을 기준하여 공사 완료 후 GUARENTEE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 (폐기물 처리)

- 가)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은 "을"의 부담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해야 한다.
- 나) 처리는 합법적인 면허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고 ~~한국~~은 사전에 처리업체 및 기타 사항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분쟁해결)

- 가)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배상청구 및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신의와 성실로써 원만한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 나) 분쟁해결의 소송사유 발생시 소송기관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4) 작업 완료후에는 반드시 전 작업구간을 순시하여 작업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감독원 완료 통보를 하도록 명심해야 한다.

다. 작업 조장 (전 공장)

- 1) 작업시간 30분전에 전 작업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키고 다음 사항을 지시 한다.

1. 작업 구간 및 작업 범위 설명

2. 시공 방법 및 사용 자재 배치 지시;

3. 안전 장비 점검 및 동작 확인

4. 작업원 적소 배치 지시

- 2) 조작기기 설치 장소에 조작원을 분담 배치시켜 점검 및 시공자를 결정하여 고정 배치하도록 한다.

- 3) 작업 구간 지역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통행이 혼잡한 곳에는 사(4)방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통행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한다.

- 4) 공사 시공상 애로사항이 발생할때에는 즉시, 현장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시정을 요하도록 연락망을 충분히 가지도록 한다.

6. 재해 방지책 임자 성명 : 김 성기 소속(직급): 이사

전화번호(핸드폰) : 010-213-3894

7. 현장 대리인 성명 : 조 원석 소속(직급): 대리

전화번호(핸드폰) : 010-217-244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1-30
상 호 : 주식회사 휴먼 이엔지
대 표 이 사 : 이
전 화 :



귀하

기술시방서

- 1.UTILITY (EXHAUST,LN2) LINE 증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건축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2.외부에 설치되는 철구류 및 앵글 외함은 2회 이상 방청PAINT 및 에나멜PAINT 도장 완료 & 조립 후 1회 이상 Paint 도장을 하여야 한다.
- 3.Exhaust line에서 분기되는 Valve끝에 NW40&63으로 시공한다.
- 4.각종 철구류에 취급되는 앙카Bolt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5.Main duct의 지지철물은 SUS Angle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 6.Fan motor와 main배관의 연결은 후렉시블 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7.Fan motor 선정시 2차Scrubber를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한다.
- 8.Clean room 내외부 구멍뚫기 작업은 시공 후 즉시 밀폐한다.
-C/R내외부 마감작업은 미관을 고려하여 미감한다.
- 9.Gas cabinet 이전공사가 9월 이후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이므로 이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Gas cabinet이전완료 후 지급한다.
- 10.Clean room출입시 Particle을 고려하여 정전복장을 착용하여 출입한다.
- 11.LN2 Hook-up공사시 기존에 설치된 Filter 및 부속품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기존배관은 철거한다.
- 12.LN2 LINE 공사완료 후 가압TEST를 실시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 13.공사완료후 안전표지판(위험&경고)을 부착한다.
- 14.일일 작업일보 작성 및 일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內 譯 書

JUL. 2001.



(주) 휴먼이엔지

內譯書

西期 2001년 7 월 18 일

(주)아이피에스 貴下

다음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工事名: 배기SYSTEM 보완공사

金額: 삼천이백만원정

(₩32,000,000)

등록번호	220-81-75045		
상호	주식회사 휴먼이엔지	성명	이준주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30		
업태	건설, 서비스	종목	설비공사
Phone	(02)529-3572	FAX.	(02)529-3566

특기사항 : VAT 변환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A. 직接管												
터보배기휀	25M3/MIN	대	3	600,000	1,800,000	50,000	150,000	50,000	150,000	50,000	150,000	2,100,000
기계기초공사	식	식	1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550,000
외벽마감공사	식	식	1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PIPE SUS304 용접	8"	톤	9	272,690	2,454,210							2,454,210
	6"	톤	16	199,620	3,193,920							3,193,920
	4"	톤	2	137,690	275,380							275,380
	1"	톤	5	39,444	197,220							197,220
ELBOW SUS304 용접	8"	개	15	70,885	1,063,275							1,063,275
	6"	개	14	36,170	506,380							506,380
	4"	개	4	13,210	52,840							52,840
	2-1/2"	개	2	5,814	11,628							11,628
	1-1/2"	개	30	2,503	75,240							75,240
	1"	개	10	1,485	14,850							14,850
REDUCER SUS304 용접	8" * 6"	개	2	58,960	117,920							117,920
TEE SUS304 용접	8" * 8"	개	4	77,860	311,440							311,440
	8" * 6"	개	4	77,860	311,440							311,440
	6" * 6"	개	2	40,170	80,340							80,340
	6" * 4"	개	6	40,170	241,020							241,020
	6" * 2-1/2" :	개	4	40,170	160,680							160,680
	6" * 1-1/2"	개	30	40,170	1,205,100							1,205,100
CAP SUS304 용접	8"	개	2	31,200	62,400							62,400
	6"	개	4	17,200	68,800							68,800
합FLANGE SUS304용접	8"	개	2	60,480	120,960							120,960
	6"	개	5	45,440	227,200							227,2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합FLANGE SUS304용접	4"	개	1	26,080	26,080				26,080
BALL VALVE SUS304 냉사	2-1/2"	개	4	42,500	170,000				170,000
	1-1/2"	개	30	20,520	615,600				615,600
	1"	개	6	15,600	93,600				93,600
	1/2"	개	10	7,800	78,000				78,000
BUTTERFLY VALVE SUS304	8"	개	2	185,760	371,520				371,520
	6"	개	2	96,800	193,600				193,600
	4"	개	2	58,480	116,960				116,960
NIPPLE SUS304 용접	2-1/2"	개	4	2,100	8,400				8,400
	1-1/2"	개	60	1,500	90,000				90,000
NW FLANGE SUS316	NW63	개	8	13,800	110,400				110,400
	NW50	개	4	9,700	38,800				38,800
	NW40	개	30	7,400	222,000				222,000
PLENUM CHAMBER SUS304	8"	개	4	68,500	274,000				274,000
ROUND DAMPER SUS304	D200	개	8	80,000	640,000				640,000
	D150	개	2	60,000	120,000				120,000
	D100	개	6	50,000	300,000				300,000
SUS FLEXIBLE CONNECTOR	D200	개	1	165,000	165,000				165,000
용접봉 SUS		개	2	50,000	100,000				100,000
GF BRADE HSS		개	4	65,000	260,000				260,000
Ar		병	4	35,000	140,000				140,000
Ar 장갑		개	20	3,000	60,000				60,000
지지대 제작설치	관가격의 15%	식	1	918,110	642,677				1,560,786
소모장자재	관가격의 5%	식	1	296,176	296,176				296,176
총접공		인	41		57,021	2,337,861			2,337,861

